

사방시설의 관리·점검·안전진단·안전조치(제12조 관련)

1. 사망시설의 관리

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망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2. 사망시설의 점검

가. 점검 종류

- 1) 정기점검: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사방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준공 후 경과기간 및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.
- 2) 수시점검: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사망시설 관리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.

나. 점검 방법

- 1) 외관점검: 육안(맨눈)으로 외관상 사망시설의 균열, 누수,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한다.
- 2) 정밀점검: 외관점검 결과 사망시설의 관리자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파괴검사 등을 이용하여 사망시설의 내부균열,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다. 점검 기관

사방시설의 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[정밀점검의 경우에는 1) 또는 2)의 기관만 해당한다]에 의뢰하여 실시한다. 다만, 해당 사망시설을 시공한 기관에는 의뢰할 수 없다.

- 1)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
- 2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망사업 관련 공익법인
- 3)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
- 4)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
- 5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

3. 사망시설의 안전진단

가. 안전진단 대상

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라 설치된 사방댐 중 제2호나목2)에 따른 정밀점검 결과 심각한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나. 안전진단 방법

비파괴검사 등 안전진단 기술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사방댐의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한다.

다. 안전진단 기관

안전진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.

- 1)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
- 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

4. 사망시설의 안전조치

가.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제2호의 점검 또는 제3호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망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시설의 보완·개량·철거·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. 기타

그 밖에 사망시설의 관리·점검·안전진단·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